

국립축산과학원 연혁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'52.05.10	○ 중앙축산기술원직제 (대통령령 제640호)	47	○ 중앙축산기술원 발족 - 서무과, 가축과, 가공과, 경영과, 경주·화산지원 * 4과2지원	
'56.07.01	○ 중앙축산기술원지원의설치및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(농림부령 제43호)	47	○ 기구신설 - 중앙축산기술원 산하에 대전, 대관령, 사천, 제주지원을 증설 * 종전 4과2지원 ⇒ 조정 4과6지원(증4지원)	
'57.05.28	○ 농사원직제 (대통령령 제1274호)	44	○ 농사원소속 축산시험장 발족 - 중앙축산기술원→농사원 축산시험장으로 개편 * 4과6지원	
'58.01.01	○ 농사원직제 (대통령령 제1324호)	44	○ 기구명칭 변경 - 가공과를 축산화학과로, 각 지원을 지장으로 개칭 * 종전 4과6지원 ⇒ 조정 4과6지장	
'61.10.02	○ 농사원직제 (각령 제183호)	119	○ 기구변동 - 축산시험장을 농사원 시험국 축산부(가축과, 가공과)와 성환, 대전, 경주, 사천, 제주시험장으로 개편, 대관령지장은 신설되는 고령지시험장에 편입 (정원조정 : 기능직 80명 증) * 종전 4과 6지장 ⇒ 조정 2과 5시험장(△2과 △1지장)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'62.03.29	○ 농촌진흥청직제 (각령 제615호)	99	○ 기관명칭변경 및 기구변동 -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으로 개편 - 대전,경주,사천시험장은 각지장으로 개칭, 성환은 대가축과에 편입, 제주는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으로 승계 (정원조정 : 연구10 증, △행정1, △기능29) * 종전 2과5시험장 ⇒ 조정 4과3지장(△2과△2시험장)	
'63.12.16	○ 농촌진흥청직제 (각령 제1709호)	98	○ 기구변동 - 화산지장을 대가축과에서 분리 * 종전 4과3지장 ⇒ 4과 4지장(증1지장)	
'67.09.08	○ 농촌진흥청직제 (대통령령 제3211호)	107	○ 기구변동 - 장장밑에 연구조정관을 둠 - 화산지장→대가축과 편입, 각지장은 종계장, 종우장, 종돈장으로 개편 (정원조정 : 증 연구12, 행정1, △기능4) * 종전 4과4지장 ⇒ 조정 1관7과1종계장 1종우장1종돈장(증 1관, 3과, △1지장)	
'68.12.31	○ 농촌진흥청직제 (대통령령 제3695호)	113	○ 기구변동 - 경주종우장 폐지 (정원조정 : 증 연구5, 행정1) * 종전 1관7과1종계장1종우장1종돈장 ⇒ 조정 1관7과1종계장1종돈장(△1종우장)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'69.04.01	○ 농촌진흥청직제 (대통령령 제3799호)	66	○ 기구개편 - 축산시험장 수원으로 이전, 국립종축장 분리 - 대전종계장,사천종돈장은 국립종축장으로 승계 (정원조정 : △연구11, △행정2, △기능34) * 종전 1관7과1종계장1종돈장 ⇒ 조정1관6과 (△1과,△1종계장,△1종돈장)	
'70.04.08	○ 농촌진흥청직제 (대통령령 제4873호)	70	○ 과 명칭변경 - 축산시험장 과(科)편성을 연구담당관제로 개편 (정원조정 : 연구1, 기능3 증) * 기존 1관 6과 ⇒ 조정 1과 5담당관(△1관)	
'80.06.18	○ 농촌진흥청직제 (대통령령 제9915호)	74	○ 정원조정(△기능2, 고용원6 증)	
'81.11.02	○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(대통령령 제10548호)	133	○ 정원조정 및 명칭변경 - 연구담당관을 과(科)로 개칭 (고용원 6명 → 65명으로 증) * 기존 1과 5담당관 ⇒ 조정 6과	
'83.10.08	○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(대통령령 제11244호)	155	○ 기구개편 - 가축단위 중심제로 6개과를 8개과로 확대개편 (정원조정 : 연구 22명증→농기연12,호시5,영시5 이체받음) * 기존 6과 ⇒ 변경 8과	
'91.11.05	○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(대통령령 제13506호)	205	○ 정원조정 - 기구개편에 의해 증원하되 직할시 및 시.군에 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이체받아 상계조정 (정원조정 : 연구 50명증→연구관 3명, 연구사 47명)	

일자	근거법령	정원	주요내용	비고
94.12.23	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14455호)	413	○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(농림수산부소속)을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하고 그 밑에 2부(축산기술부, 종축개량부)를 둠(정원조정 : 증208) * 축산시험장 8과 205명+국립종축원 6과4지원 222명 =427명 ⇒ 413(△14) * 종전 14과4지원 ⇒ 조정 2부11과4지소(증2부△3과)	
96.02.22	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14928호)	411	○ 정원조정 : △2(기능2)	○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설
96.06.29	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15049호)	411	○ 복수직급제 확대 실시 - 행정사무관 1→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	
97.03.20	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15305호)	403	○ 정부의 행정지원인력 감량화계획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(△8)	
98.02.28	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15726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(농림부령 제1281호)	392	○ 정원조정 : △11(연구2, 기능9)	○ 농촌진흥청및그소속기관 정원감축(141인)
98.08.01	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15854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(농림부령 제1290호)	364	○ 기구변동 및 정원조정 - 축산기술연구소의 유전육종과와 번식생리과를 통합하여 육종번식과로 개편(△28:연구2, 기능26) * 종전 2부11과4지소 ⇒ 조정 2부10과4지소(△1과)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99.05.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16349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(농림부령 제1332호) 	33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구변동 -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천지소를 폐지하여 본소의 중소가축과로 통합(△30:행정1, 연구16, 기능13) * 종전 2부10과4지소 ⇒ 조정 2부10과3지소(△1지소) 	
01.01.0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2000.12.30, 대통령령 제17082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(2000.12.30, 농림부령 제1376호) ○ 책임운영기관의설치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(2000.8.28, 대통령령 제16957호) 	33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운영기관 전환 - 과명칭 변경 · 육종번식과→유전공학과, 시설환경과→축산환경과 - 대전지소를 폐지하여 종축개량부 소속에 가금과 신설 * 종전 2부10과3지소 ⇒ 조정 2부11과2지소(증1과△1지소) 	
02.03.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2002.3.2, 대통령령 제17532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(2002.3.6, 농림부령 제1411호) 	33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구신설 - 농업생명공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의 유전공학과를 기초생명공학과로 개편하고 응용생명공학과를 신설 * 종전 2부11과2지소 ⇒ 조정 2부12과2지소(증1과) 	
02.06.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운영기관의설치·운영에관한법률개정(법률 제6666호, 02.3.25) ○ 축산기술연구소 기본운영규정(훈령제50호, 02.6.25) 	33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부과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- 검정기술과→유전자원과, 대가축과→낙농과, 중소가축과→양돈과 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04.01.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2004.1.9, 대통령령 제18212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(2004.1.29, 농림부령 제1454호) ○ 축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(훈령 제59호, 04.1.29) 	33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칭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기술연구소 → 축산연구소 ○ 기구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지원과 신설, 유전자원과 폐지 - 기초생명공학과→동물유전체과, 초지사료과→조사료자원과, 대관령지소→한우시험장, 남원지소→가축유전자원시험장 * 종전 2부12과2지소 ⇒ 조정 2부12과2시험장 	
06.04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2006.4.6, 대통령령 제19441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(2006.4.11, 농림부령 제1523호) ○ 축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(훈령 제75호, 06.4.18) 	34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력변동 : 증9(연구관4, 연구사5) * 바이오장기, 신약개발연구인력확충, 축산환경연구기능강화 및 오리연구인력보강 	
07.06.0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20079호) 	34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칭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연구소 → 축산과학원 	
07.06.2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림부령 제1557호) ○ 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(훈령 제1호, 07.6.28) 	34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구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기획조정과, 축산자원개발부 행정지원팀 신설 * 종전 2부12과2시험장 ⇒ 조정 2부13과1팀2시험장 (증1과1팀) * 인력변동 : 증3(행정△2, 연구사 증4, 연구관 증1) 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08.04.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7호) ○ 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(훈령 제18호, 08.4.25) 	34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수직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이상 직위, 4·5급 연구·지도관 직렬을 복수직으로 부여 	
08.10.0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운영기관의설치·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(대통령령 제21074호) ○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21078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33호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호, 08.10.8) 	33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칭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과학원 → 국립축산과학원 ○ 난지농업연구소 축산과 기능 이관 ○ 인력변동 : △8(일반직증29, 기능직△3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난지연 축산과 흡수(증15:연구직9, 기능직6) ○ 기구변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기획조정과→기획조정과, 행정과→운영지원과, 축산기술지원과→기술지원과, 응용생명공학과→동물바이오공학과, 개량평가과→가축개량평가과, 조사료자원과→초지사료연구센터, 난지농업연구소 축산과 →제주출장소, 행정지원팀 폐지 * 종전 2부13과1팀2시험장 ⇒ 조정 2부12과1센터2 시험장1출장소 	
08.12.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7호, 08.12.31) 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 직무등급 : 라→나등급 	
09.09.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운영기관의설치·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(대통령령 제21703호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41호, 09.09.06) 	31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구변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지사료연구센터→초지사료과, 제주출장소→난지축산시험장 ○ 인력변동 : △19(연구사 14, 기능10급 5) 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09.10.23	○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52호, 09.10.23)	319	○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- 증원 : 5명(행정서기3, 행정서기보2) - 감축 : 5명(기능9급 1,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)	
10.02.18	○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55호, 10. 2.18)	319	○종합민원실 운영 등 민원업무 조정 ○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- 증원 : 7명(행정서기 5, 행정서기보 2) - 감축 : 7명(기능직 사무실무원 7)	
10.05.11	○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60호, 10. 5.11)	319	○신규연구분야 신설 ○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분장 개정 - 반려동물분야, 친환경축산, 유기축산 등	
11.02.17	○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73호, 11. 2.17)	319	○생활지도직렬이 농촌지도직렬로 통합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○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- 증원 : 7명(행정서기6, 행정서기보1) - 감축 : 7명(기능직 사무실무원 7)	
11.11.24	○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82호, 11.11.24)	319	○총액인건비로 직급조정된 운영정원 반영 - 증원 : 전산사무관 0명→1명 - 감축 : 전산주사 1명→0명 ○인사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변경사항 반영 ○기획조정과장 직위에 보하는 직급 현행화 ○신규 연구분야 신설 : 부속 동물병원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12.6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23813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279호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93호, 12.6.1) 	3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수목적견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소요정원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원 : 4명(연구관1, 연구사3) ○ 연구개발 어젠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원 : 1명(연구관1) ○ 개발기술의 보급 기능 강화에 따른 기술지원과 분장 내용 변경 및 복수직(±6) ○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(비서요원)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원 : 8명(행정서기5, 행정서기보2, 기능9급 사무실무원 비서요원1), 감축 : △8명(사무기능직 8) ○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9급에 통합 운영 	
13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05호, 13.1.1) 	3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원 : 행정주사보 2명 → 3명(+1) - 감축 : 행정서기 21명 → 20명(△1) ○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별도 정원 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도정원: 4명(6급 1, 7급 1, 8급 1, 연구사 1) ○ 공정한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13.7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38호, '13.7.1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11호, '13.7.1) 	3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능직 사무실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능9급 사무실무원(비서요원) 1명 감축, 행정서기 1명 증원 ○ 총액인건비제 운영 직급격상 직위 정비(별표1,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능8급 운전원 1명 감축, 기능9급 운전원 1명 증원 ○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간 업무조정 등 	
13.10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15호, 13.10.15) 	3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 별도정원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축 : 3명(6급 1, 7급 1, 8급 1) * 4명 → 1(연구사) * 매년 안행부의 육아휴직자현황 조사결과를 반영 	
13.12.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24975호, '13.12.12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62호, '13.12.12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16호, 13.12.12) 	3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3년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 3명 감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연구사 △2명(연구사 1, 연구사지도사 1), 기능9급 운전원 △1명 ○ 총액인건비제 운영 직급격상 직위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연구관 △1명, 농업연구사 +1명 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14.3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25242호, '14.3.11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83호, '14.3.11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24호, 14.3.11) 	3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4년 소요정원 2명 증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산업 연구 강화 인력 2명(연구사 2) 증원 	
15.1.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25998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128호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33호, 15.1.6) 	3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방역 증원 : 3명(수의사무관·수의연구관 1, 수의주사·수의연구사 2) ○ 관리운영직군 8명(6급 1, 7급 1, 8급 1, 9급 5)감축, 기술직군 8명(6급 1, 7급 2, 8급 5) 증원 ○ 통합정원제 3명 감축 : 농업연구관(축산) 1, 농업연구사(축산) 1, 9급(위생서기보) 1 ○ 총액인건비제 직급격상 정비 : 농업연구관 △1명, 농업연구사 +1명 ○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소속기관인 한우시험장을 한우연구소로, 난지축산시험장을 난지축산연구소로,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가축유전자원센터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함 ○ 축산환경과의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영양생리팀으로 이관 ○ 영양생리팀에 가축 사료 및 소화관 미생물에 관한 연구 기능 신설 	

일자	근거 법령	정원	주요 내용	비고
15.5.2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(대통령령 제26277호) ○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(농식품부령 제142호) ○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(훈령 제138호, 15.5.26) 	3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‘가축질병방역팀’ 신설 - 운영기간 : 2015. 6. 1. ~ 2018. 5. 31. ○ 기획조정과 도서실 운영은 분청으로 이관 	